경조에관한규정 4-3-10

규정번호 4-3-10
제정일자 2011.9.19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6차 개정
관리부서 총무회계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직원 및 우리대학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각종 경조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6)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2.16)

1. 전임교원, 조교(개정 2015.2.16)
2. 일반직, 기술직, 계약직, 촉탁직(개정 2022.04.08.)
3. 우리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신설 2015.2.16)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자(신설 2015.2.16)

제2장 경조금

제3조(경조금) 경조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경조금의 수령절차) ① 경조금의 수령자는 사유 발생일 이전 7일 또는 이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②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수령자는 상속인으로 한다.

제3장 학교장

제5조(학교장) 우리대학 학교장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총장이 서거하였을 때
2. 기타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이 서거하였을 때

제6조(장례준비위원회) ① 제5조에서 규정하는 해당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 장례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4.7.24.)

③ 유가족이 학교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른다.

④ 학교장의 절차는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장례비) 학교장의 장례비 일체는 우리대학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5조의 해당자가 가족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장례비를 우리대학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조의) ① 학교장이 끝날 때까지는 대학 내에서 가무 및 문란한 행위는 일체 삼가하여야 하며, 전 교직원과 학생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발인 당일은 휴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2항)